

부속서 3-라-1

제3.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

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(세관인증번호.....¹)는,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상품이 특혜원산지 (²) (장소 및 우편번호³) 상품임을 신고한다.

¹ 수출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

² 원산지 국가, 즉 한국 또는 이스라엘

³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(우편번호를 포함한다)